

보험료(제1호 피보험자) 납부 방법은 「특별징수」와 「보통징수」의 2종류가 있습니다

특별징수

4월 1일 현재, 노령·퇴직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(노령복지연금은 제외)을 연간 18만엔 이상 수급받고 있는 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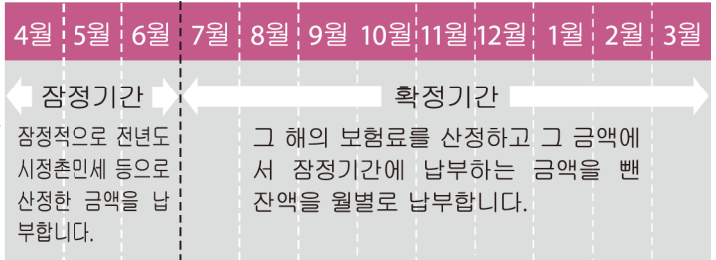
지급되는 연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됨.



보통징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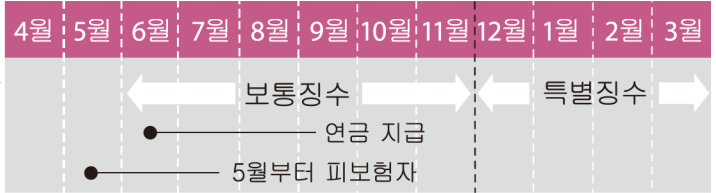
4월 1일 현재, 노령·퇴직연금 등의 수급액이 1년에 18만엔 미만인 분 등

송부되는 납부서로 개별적으로 납부. (납부는 계좌이체가 편리합니다.)



새롭게 피보험자가 된 분 중에 노령·퇴직연금 등을 연간 18만엔 이상 수급받고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그 수급월로부터 6개월 이후에 특별징수로 됩니다.

예를 들면, 5월에 피보험자가 된 분으로 6월부터 연금을 수급받는 경우



※피보험자가 특별징수나 보통징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.

보험료(제1호 피보험자)의 결정 통지에 관하여

특별징수(연금에서 지불)에 해당되는 분

- 당해년도 시정촌민세 등을 이용하여 연액보험료를 산정하고 10월·12월·2월에 특별징수되는 보험료 및 다음년도의 4월·6월·8월(다음년도 임시징수액)에 특별징수되는 보험료를 7월 중순에 통지합니다.
- 또한, 4월·6월·8월분의 상반기 보험료와 10월·12월·2월분의 하반기 보험료에 큰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회에 지불하는 보험료 금액이 동일한 정도의 금액이 되도록 6월·8월분의 보험료 금액을 변경하여 4월 중순에 연액보험료를 통지해 드립니다.

보통징수에 해당되는 분

- 매년 4월에 전년도의 시정촌민세 등을 이용하여 임시로 계산(임시산정)하여, 4월 중순에 연간보험료를 통지합니다.
- 또한, 당해년도 시정촌민세를 이용하여 재계산하여, 보험료·징수방법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7월 중순에 재차 「변경 결정 통지서」를 송부합니다.

●연도 도중에 보험료 등급이 변경된 분, 보통징수에서 특별징수로 징수방법 등이 변경된 분에게는 다시 보험료 변경 결정 통지서를 송부해 드립니다.